#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044

발의연월일: 2025. 3. 18.

발 의 자: 한준호·김문수·박용갑

이건태 · 복기왕 · 박균택

정준호 · 허성무 · 정태호

이용우 · 강유정 · 박상혁

김원이 · 김성회 · 김동아

의원(15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음.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위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요청은 해당 정보가 게시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지만, 이로 인한 분쟁조정의 신청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피해구제 사이트에서 하도록 되

어 있어 이용자들이 이러한 절차를 쉽게 알기 어렵고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.

한편, 현행법에 있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·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공백이 발생함.

이에 명예훼손 정보가 유통된 정보통신망을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등 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 조치를 한 사실과 함께 해당 정보를 게재·유통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,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·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의2, 제44조의10,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신설 등).

##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2제2항 전단 중 "알려야"를 "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"로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필요한 조치를 한"을 "제1호의"로 하며, 같은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삭제 ·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
- 2.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게재·유통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
- 3. 제44조의12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는 사실

제44조의10제1항 중 "명예훼손 분쟁조정부"를 "명예훼손 분쟁조정부(이하 "분쟁조정부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"을 "분쟁조정부의 위원(이하 "조정위원"이라 한다)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·운영 및 분쟁조정"을 "그 밖에 분쟁조정부

- 의 설치 · 운영"으로, "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"을 "필요한"으로 한다.
  - ③ 조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4조의11(조정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) ① 조정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에 회부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청구사건(이하 이 조에서 "사건"이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 - 1.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 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강력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 계에 있는 경우
  - 2.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 - 3.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,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
  - 4.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  - ② 당사자는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 쟁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

한다.

- ③ 조정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
- 제44조의12(분쟁조정의 신청 등)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.
  - ③ 그 밖에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신청 및 접수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4조의13(분쟁조정의 절차 등) ① 심의위원회는 제44조의12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.
  -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합의 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분쟁조정부에 회 부하여야 한다.
  - ③ 분쟁조정부는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심의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-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.
- ⑤ 심의위원회는 조정안이 의결된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- ⑥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.
- ⑦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(제6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심의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, 심의위원 회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조정서 정본 을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 다만, 제6항에 따라 수락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.
- ⑧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제7항에 따른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
- ⑨ 그 밖에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4조의14(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)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쟁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- 1.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. 그 밖에 분쟁의 성질상 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경우
-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66조제5호 중 "명예훼손 분쟁조정부"를 "분쟁조정부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	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	②
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	
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	
삭제・임시조치 등의 필요한	
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	
정보게재자에게 <u>알려야</u> 한다.	<u>다음 각 호의 사실</u>
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	<u>을 알려야</u>
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	<u>제1호의</u>
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	
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	
록 하여야 한다.	<u>.</u>
<u>&lt;신 설&gt;</u>	1. 삭제·임시조치 등의 필요한
	조치를 한 사실
<u>&lt;신 설&gt;</u>	2.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명예
	훼손 분쟁조정부에 사생활의
	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
	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
	게재・유통한 이용자 정보의
	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
	<u>실</u>
<u>&lt;신 설&gt;</u>	3. 제44조의12제1항에 따라 심

#### ③ ~ ⑥ (생 략)

- 제44조의10(명예훼손 분쟁조정부) 제4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 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화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 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, 그 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 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
  -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.
  -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 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 3조의2제2항, 제35조부터 제39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

의위원회에 사생활의 침해 또
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
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
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
<u>사실</u>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44조의10(명예훼손 분쟁조정부)
①
명
으 예훼손 분쟁조정부(이하 "분쟁
조정부"라 한다)
<u> </u>
 ② 분쟁조정부의 위원(이하
<u> '조정위원"이라 한다)</u>
① 고객이이이 이러는 1대소크
③ 조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

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사

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

새로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

경우 "분쟁조정위원회"는 "심 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 의위원회"로, "개인정보와 관련 한 분쟁"은 "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 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"으로 본다.

치・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 ・운영-----필요한-----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로 한다.

제44조의11(조정위원의 제척ㆍ기 피 및 회피) ① 조정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에 회부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청 구사건(이하 이 조에서 "사건" 이라 한다)의 심의 · 의결에서 제척된다.

- 1.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강력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
- 2.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 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

던 경우

- 3.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 하여 증언, 감정 또는 법률자 문을 한 경우
- 4.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

   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

  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

   여하였던 경우
- ② 당사자는 조정위원에게 공 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 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 다. 이 경우 분쟁조정부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.
- ③ 조정위원이 제1항 또는 제2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·의 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제44조의12(분쟁조정의 신청 등)
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심의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

<신 설>

<신 설>

수 있다.

-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.
- ③ 그 밖에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신청 및 접수의 방법·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4조의13(분쟁조정의 절차 등)
  ① 심의위원회는 제44조의12제
  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.
  -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합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분쟁조정부에 회부하여야한다.
  - ③ 분쟁조정부는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 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 을 심의위원회에 건의하여야

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 는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-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.
- ⑤ 심의위원회는 조정안이 의결된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- ⑥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.
- ①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(제6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심의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,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다만, 제6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생략할수 있다.

- ⑧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 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 우에는 당사자 간에 제7항에 따른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
- ⑨ 그 밖에 명예훼손 분쟁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4조의14(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)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을 거부 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쟁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- 1.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
- 2. 그 밖에 분쟁의 성질상 심의 위원회에서 분쟁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66조(비밀유지 등) 다음 각 호 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~ 4. (생 략)

<u>3.</u>	당	사ス	<u> </u>	쪽	또	느	어!	=	한	쪽
-	اد	분/	쟁조	정이	1]	승	할	의	사	<u>가</u>
<u> </u>	없음	을	丑ノ	시하	는	경	우			
2	싵	]의	위원	회	늗	신 :	청돈	]	분	쟁
<u>조</u>	정	사	건에	Ľ	H 한	ラ	리리	절	차	를
<u>진</u>	행경	하던	중	에	한	쪽	당	·사	자	<u>가</u>
<u>소</u>	를	제기	기하	면	ユ	조	정의	기	처	리
를	F	시	하고	Ó	]를	Ę	강사	·자	에	게
<u>알</u>	려o	)	한다.	<u>.</u>						
166	조(	비년	일유?	지 -	등)					
1.	~	4.	(현	행고	<b>-</b> 같	<u> 음</u>	)			